



제347회 제1차 정례회
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
2024. 6. 12. (수)

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614
제안일자	2024. 5. 30.
회부일자	2024. 6. 3.

행정보건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배진석 의원 외 44명

2. 제안이유

- 종전까지 「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같은 조례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,
-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책무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예우 및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범위 규정(안 제5조)
- 라.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규정(안 제6조)
- 마. 보훈단체 지원에 대하여 규정(안 제7조)
- 바. 보훈예우수당에 대하여 규정(안 제8조)

사. 복지지원에 대하여 규정(안 제9조)

아. 관계기관 협력에 대하여 규정(안 제10조)

4. 관련법령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」
- 「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」

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 : 검토의견 반영(예산입법담당관)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(법무혁신담당관)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(감사관)
- 성별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(감사관)
- 해당부서 : 의견없음(사회복지과)
- 예산관련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(사회복지과)

6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: 2024. 6. 3. ~ 6. 10.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-93호)

○ 의견제출: 없음

7. 검토의견

□ 제정이유

-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「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를 같은 조례에 포함하여 예우하던 것을,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신설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함.
- 경상북도에는 2024년 1월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18,078명에 이르고 있지만, 경상북도 차원에서 보훈예우(명예)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, 시군별로 18,078명에게 7만원에서 15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<2024년 경북도내 시·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등 현황>

(단위: 명, 만원)

시군명	*참전명예수당 등					**보훈예우(명예)수당 등				
	지급인원 (전물유족)	참전 수당	사망 위로금	미망인	연령 제한	지급 대상	지급인원	예우(명예) 수당	사망 위로금	연령 제한
계	15,025(2,580)					18,076				
포항시	2,490 (490)	10	30	5	×	1~18	2,798	8	30	만 65세 이상
경주시	2,504 (344)	10	30	5	×	1~18	1,700	8	30	만 65세 이상
김천시	934 (123)	10	40	5	×	1~18 고엽제, 특임, 518	1,250	10	40	×
안동시	909 (186)	10 (월남전) 15 (6·25참전)	30	7	×	1~18	1,270	10	30	×
구미시	882 (182)	15	30	5	×	1~18 특임	1,781	10	30	×
영주시	628 (128)	13 (월남전) 15 (6·25참전)	30	5	×	1~18 특임, 518	900	10	30	×

영천시	763	(130)	15	30	5	×	1~18 특입	1024	10	30	×
상주시	717	(89)	15	30	5	×	1~18	800	10	30	×
문경시	825	(82)	15	30	10	×	1~18 특입, 5.18	711	15	30	×
경산시	1,109	(249)	15	30	5	×	1~18	1,455	10	30	만 65세 이상
의성군	478	(79)	15	30	5	×	1~18	688	12	30	×
청송군	186	(26)	15	30	10	×	1~18	271	13	30	×
영양군	120	(17)	10	30	5	×	1~18	160	10	30	×
영덕군	286	(46)	10	30	5	×	1~18	375	10	30	×
청도군	293	(81)	15	30	5	×	1~8	437	8	30	만 65세 이상
고령군	215	(32)	10	30	5	만 65세 이상	1~18	274	7	30	만 65세 이상
성주군	282	(54)	10	30	5	만 65세 이상	1~18	342	10	30	만 65세 이상
칠곡군	453	(80)	10 (월남전) 20 (6·25참전)	30	5	×	1~18 특입, 5.18	565	10	30	×
예천군	350	(54)	10	30	5	×	1~18	516	10	30	×
봉화군	283	(49)	15	30	5	×	1~18	240	8	30	×
울진군	274	(55)	15	30	7	×	1~18	458	10	30	×
울릉군	44	(4)	10	30	8	×	1~18	61	10	30	×

* 참전명예수당 등: 참전유공자 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/ 시군 조례

** 보훈예우(명예) 수당 등: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/ 시군조례

○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법령 및 조례제정을 통하여 보훈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생활보조수당,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
<2024년 17개 시·도 보훈예우(명예) 수당 등 지원 현황>

(2024.1월 기준, 단위 : 천원/월)

시도	수당명	지급액	비고
----	-----	-----	----

		계	광역	기초	
경북	보훈예우수당	70~150	-	70~150	경상북도 지급 없음, 22개 시군 지급
서울	보훈명예수당	1,050~1,100	1,000	50~100	애국지사
	보훈예우수당	150~200	100	50~100	
	생활보조수당	250~300	200	50~100	
	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	250~300	200	50~100	
부산	보훈명예수당	40~140	40	0~100	
대구	보훈예우수당	100~150	50	50~10	
	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 녀 특별위문금	500	500	-	
인천	전몰군경유가족수당	120~170	70	50~100	
	독립유공자명예수당	120~170	70	50~100	
	보훈예우수당	100~150	50	50~100	
광주	보훈명예수당	200	160	40	생존애국지사
		50	40	10	독립유공자, 전몰군경 등
대전	보훈예우수당	80	50	30	
울산	보훈명예수당	100~150	-	100~150	
	참전유족수당	50	50	-	
	생활지원수당	200	200	-	
세종	보훈예우수당	50	50	-	전몰군경
		50	50	-	독립유공자
경기도	국가유공자	100	100		
	생활보조수당				
	5.18민주화유공자	100	100		
	생활지원보훈수당				
강원	강원특별자치도	210~310	60	150~250	
	보훈명예수당				
충북	보훈명예수당		30	100~160	
	보훈명예수당		30	100~150	
	보훈명예수당		30	80~130	
충남	보훈예우수당	130~300	100	30~200	
	생활보조수당	100	100		
전북	호국보훈수당	80~130	20	60~110	
전남	보훈명예수당	100~180	30	70~150	
경남	보훈예우수당	130~230	50	80~180	전몰군경유족
		100~200	50	50~150	독립유공자유족
제주	보훈예우수당	100	100	-	

- 따라서, 본 제정조례안은 다른 시·도와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서의 형평성 확보와 도내 시·군 간의 수당 지원규모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

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본 제정조례안은 본칙 10조와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음.
- 안 제1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북도민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, 안 제2조는 “희생·공헌자”, “국가보훈대상자”, “국가보훈관계 법령”, “보훈단체”, “참전자단체” 등 조례 용어를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라 규정한 것임.
 - 이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.
- 안 제3조는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조성과 보훈문화 창달을 도지사의 책무로, 안 제4조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는 시책에 대한 도민의 협력을 규정한 것이며, 안 제5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훈단체와 도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함.
 - 이는,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 및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.
- 안 제6조는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규정한 것으로

로, 각종 주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,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,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할 경우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게재,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소개,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·위로·격려,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국가보훈대상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,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,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, 생존 희생·공헌자의 사망 시 도지사 조문 및 위로,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,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선양사료의 발굴과 관련한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안 제7조는 보훈단체 및 참전자단체의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, 호국·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, 전적지 등의 순례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한 것임.

- 이는 도내 13개 보훈단체¹⁾의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안 제8조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상군경·무공수훈자, 4·19혁명부상자와 4·19혁명공로자,

1) 광복회, 상이군경회, 전몰군경유족회, 전몰군경 미망인회, 4·19민주혁명회, 무공수훈자회, 재향군인회, 고엽제전우회, 특수임무유공자회, 6·25참전유공자회, 월남전참전자회, 4·19혁명공로자회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회.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하여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.

- 이는 16개 시·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,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, 경상북도 차원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안 제9조는 보훈단체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, 자동판매기 등을 우선적으로 허가, 위탁하도록 하고, 도가 운영하는 병의원의 의료비 감면 및 건강검진 지원,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등을 복지지원을 규정한 것임.

- 이는 「국가유공자법」 제68조의2 및 「독립유공자법」 제16조의2에 따른 생업지원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, 「경상북도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도내 3개 의료원(포항, 김천, 안동) 중 포항과 안동의료원은 보훈의료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진료비 전액 감면, 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20%를 감면하고 있으나(참고자료 1), 김천의료원은 보훈의료위탁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아(김천제일병원 지정) 감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, 「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

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독립노인전문요양 병원 4개소의 경우도 별도의 의료비 감면 등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
- 따라서, 관련부서에서는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복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10조는 희생·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 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,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원만한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로 판단됨.

□ 종합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, 보훈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입법예고 등의 사전 입법절차를 이행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 특히,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확보 및 시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법의 취지와 필요성 크다 할 것임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[참고자료 1]

지방의료원 보훈의료 위탁병원 운영 관련

<24.6.5. 감염병관리과>

현 황 (24.4.18.기준)

- 위탁병원 현황 : 전국 740개소 (경북도 64개, 포항·안동의료원 포함)

구 분	지정일자	연간 진료인원(23년)	비고
포항의료원	1993년	48,638명 (외래 42,164, 입원 6,474)	
안동의료원	1987년	24,345명 (외래 18,729, 입원 5,616)	

※ 전국 지방의료원 위탁병원 지정·운영 : 28개소 * 전국의료원 35개소

<전국 위탁병원 현황 : 740개소>

서울 98, 부산 43, 대구 24, 인천 21, 광주 11, 대전 16, 세종 5, 울산 18, 경기 116, 강원 55, 충북 29, 충남 40, 전북 46, 전남 73, 경북 64, 경남 66, 제주 15

지정개요

- 지정기간 : 2년(2년마다 재심사)
- 지정방법 : 신청·접수 → 심사(대구보훈병원) → 선정(보훈청) → 승인(보훈처)
- 지정권자 : 국가보훈처장
- 신청요건 : 국가유공자 전용창구 설치,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(경사로 등)
- 운영방법 : 각 시·군 의원급 1~2개소, 병원급 1개소 지정 운영

감면혜택

- (의료비)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 감면
* 유가족 본인부담금 60% ~ 90% 감면(차상위 기준)
- (기 타) 종합건강검진비 및 장례식장 혜택

구 분	대 상	세부사항	비 고
종합검진	본인	종합건강 진단료의 20%감면	
장례식장	본인	시설사용료의 20%감면	상조이용 시 10%감면
	배우자	시설사용료의 10%감면	상조이용 시 해당 없음